

2025

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관제관련규정

엠북 교통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고득점용, 출제 기준 반영
- ★ 최근 개정 내용 반영
- ★ 1시간 43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관제자격증명 관제관련규정

ISBN : 979-11-7393-029-4

발간일 : 2025-05-22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5,000원



관제자격증명 관제관련규정

[목차]

제1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(p3)

제2편 철도차량운전규칙(p76)

제3편 도시철도운전규칙(p166~217)

[약어]

국토부는 국토교통부

장관은 국토부장관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

(이하 규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관제운영 일반사항(p18)

제3장 관제시설의 관리(p42)

제4장 관제업무 절차(p47)

제5장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등(p62)

제6장 철도사고등 발생 시 조치(p70)

제7장 보칙(p75)

[약어]

수행자는 관제업무수행자

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철도안전법(이하 안전법) 시행규칙에 따라
-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
-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 기준/절차, 방법 규정

2. 정의

- 이외 용어는 안전법 등 철도 관련 법령과 규정 따름

1) 관제구역

가) 철도산업발전기본법(이하 철산법)에서
정한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을
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

나) 다음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 제외
- 정상운행 전 신설선, 개량선에서 운행
- 차량정비기지, 차량유치시설에서 운행

2) 관제기관
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(이하 규칙)에서 정한
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

철도산업발전기본법(이하 철산법) 시행령에
따라 장관이 설치/운영하는 다음

철도교통관제시설

가) 철도교통관제센터(이하 관제센터)

- 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

나) 예비철도교통관제실(이하 예비관제실)

- 관제센터가 지진, 테러, 피폭 등으로 정상적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해도 관제업무를 계속하도록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 설치

다) 관제운영실

- 철도사고등(철도사고, 운행장애, 재난) 발생시 상황보고/전파, 대응, 복구 지시 등 수행

3) 관제설비

-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장관이 관제기관에 설치
- 열차집중제어장치(CTC), 대형표시반(DLP), 제어(관제)콘솔, 주컴퓨터, 열차무선설비, 관제전화설비 등

4) 관제시설 관리업무

- 관제기관에 설치된 관제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관리

5) 관제실

- 관제기관에서 종사자가 관제업무하는 장소

6) 관제업무: 안전법, 철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등

-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철도차량 운행 제어/통제/감시
- 철도시설 운용상태, 철도차량 등 운행 관련 조언/정보 제공
- 철도차량 등 적법운행 지도/감독
- 철도보호지구에서 제한되는 행위시 열차운행 통제
- 철도사고등 발생시 사고복구 지시
- 철도교통관제시설 관리
- 장관 지시 사항

7) 관제업무수행자

- 철산법 시행령/시행규칙에 따라
철도교통관제시설 관리와 관제업무를
위탁받아 수행

8) 관제업무종사자

- 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
수행

9) 관제지시

- 관제기관, 종사자가 철도차량 안전운행을
위해
- 철도운영자,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시설
유지보수시행자, 철도종사자, 철도시설 내
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등에

- 지시나 필요한 조치함

10) 선로사용계획

- 열차운행계획은 열차운행을 위한

선로사용계획

- 열차운행시각표 포함

- 선로작업계획은 선로 등 건설,

개량/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

1) 선로사용자

가) 철도운영자

- 한국철도공사

- 철도사업법에 의해 철도사업면허 받아

철도운영 업무 수행하는 자

나) 선로작업시행자

- 선로 등 건설, 개량/유지보수

2) 선로배분시행자

- 선로용량 배분 업무 수행

3) 운전정리

가)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

발생/염려시 열차 운행조건, 일정 등을 변경해

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하는 수단

나) 종류

- 운전휴지는 열차운행 일시 중지
- 운행순서변경은 먼저 운행할 열차 운행시각 변경않고 운행순서 변경
- 운행선로변경은 열차운행방향 변경않고 운행선로 변경
- 단선운행은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으로 한쪽 방향 선로 사용 못할 때 다른 방향 선로를 사용해 상/하행열차 운행
- 운행시각 변경은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춤
- 열차합병은 운행 중 둘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해 운행
- 특발은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

따로 열차를 구성해 출발시킴

- 교행변경은 단선구간에서 열차의
교행정거장 변경

- 대피변경은 복선구간에서 열차의
대피정거장 변경

- 열차번호변경은 소정의 열차번호 변경

- 폐색구간, 폐색방식 변경은 신호, 차량 등에
장애가 발생해 폐색구간, 폐색방식 변경

- 임시서행은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속도를
낮추어 운행

- 임시정차는 철도사고등 발생, 부상자
긴급후송, 선로 긴급수리 등을 위해 열차 임시

정차

- 편성차량변경은 열차 소정의 철도차량 연결량 수 변경
- 임시열차운전은 철도사고등에 따른 구원열차, 임시열차 운행 승인, 지시
- 철도교통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

4) 철도시설관리자

- 철도시설 건설/관리

5) 철도운영자등

- 철도운영자, 철도시설관리자

6) 철도종사자